

정책연구용역 과제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정책 연구과제명	대한의사협회 장애평가기준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적용 방안 →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가능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과제 담당관	소속(직위)	사법정책연구원(판사)	성 명	박기쁨	
예상 연구기간	2020. 6. 1. ~ 2020. 11. 30. (6 개월)				
예상 연구금액	3,3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			
		<input type="checkbox"/> 별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제안서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수의계약시 점검사항	<input type="radio"/> 법적 근거 : [예시]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input type="radio"/> 수의계약으로 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				
	<input type="radio"/> 연구자선정 동시 심의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시 심의 <input type="checkbox"/> 추후 심의				
정책연구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는 1950년대 미국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각종 검사법이나 의학적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정형외과에 편중되어 있어 치과나 추상장애 등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정형외과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세분화된 분류항목이 다소 미흡함, 또한 이 표의 원서에 신체장애의 정도 또는 직업별 장해계수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비율적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가 있음, 나아가 등급판정에 있어 해당조항이 없을 때 유사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는 준용규정이 없고,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은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해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중복 평가의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사협회 지침(AMA 지침)은 장해분류가 정밀하고 영구적인 신체장애만 표시하고 있으며 복합장애 평가에 있어 보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순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만을 표시하고 환자의 연령이나 업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손해배상 실무상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함, 또한 신체장애의 정도를 신체 분야별로 구체화하지 않고 일상생활 활동 상의 불편함의 정도 등 추상적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분류하였으며, 신체장애율 표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구성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신체장애등급표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아주 막연하고 불명확하게 신체장애를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우 어느 항목에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매우 어려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의 경우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 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기준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함
- 대한의학회(KAMS)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2007년부터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로운 장애평가기준을 개발하여 2011년에 출판한 후 근골격계 분야와 뇌신경계 분야를 수정, 보완하는 등 개정하여 2016년 10월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을 발간함, KAMS는 위 기준이 기존 장애평가의 불균형과 누락을 시정하고 현대 한국의 직업분포에 맞는 직업계수의 설정과 일관성 있는 직업계수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맥브라이드 방식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고 함, 다만 위 장애평가기준의 경우 미국의사협회(AMA) 지침 5판을 모델로 연구한 것이어서 2008년에 개정된 6판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정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통증장애의 범위를 협소하게 했고, 그 판정기준도 최근 의학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CRPS(복합부위통증후군)의 경우 대부분의 CRPS 환자가 배제된다는 문제제기임]
- 현재 법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여전히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감정이나 그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최근 KAMS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임)[단, CRPS의 경우 AMA에 비해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에 따라 AMA 지침을 적용한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각 당사자는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기준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맥브라이드표가 만들어질 당시의 의학과 현대의 의학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병명 또는 장애명만을 기준으로 맥브라이드표의 항목을 적용하여 장애율을 그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장애의 경중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난점이 있음, 또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방법은 직업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옥내 및 옥외 근로자로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신체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맥브라이드표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각 장애별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손해배상소송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정책연구과제 중복성 검토결과	<p>① 중복여부 검토 방법 :</p> <p>② 중복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다</p> <p>※ 유사한 기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p>
연 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장애별 노동능력상실률 판단과 관련하여 각 항목별 사례(가급적 실제 사례 활용)를 놓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비교, 분석(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수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 등 설명 포함) 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직업계수의 오류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내지 불합리한 부분 검토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에 있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맥브라이드 표에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그 표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재판을 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리 및 판결을 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자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소송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배상사건의 심리 충실햄화 및 재판의 신뢰 확보를 도모
기 타 사 항 (별지 사용 가능)	
<p>2020. 5. 18.</p> <p>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p>	
<p>※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의(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참조)</p>	